

광역경제권 관련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

작성 : 김은경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
(ekkim@gri.kr 031-250-3551)

감수 :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
(kkim20@khu.ac.kr 02-961-9172)
이영안 정책분석팀 책임연구원
(leeya@gri.kr 031-250-3510)

요약

- I. 문제제기
- II. 5+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평가
- III. 해외 사례
- IV. 경기도의 대응 방향

<요 약>

-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역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지방분권을 약화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음
- 영국은 1997년부터 잉글랜드를 9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각 광역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‘지역개발청(RDA)’ 설치
- 프랑스는 1998년부터 6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고, 국토개발과 광역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각 광역권에 ‘지역간·유럽간 협력을 위한연구 및 개발 대표단(MEDCIE)’ 설치
- 독일은 2006년에 공간개발전략으로 9개의 광역권 구분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
- 일본은 분권화에 근거한 광역계획체제를 위해 8개의 광역권역 구분
- 해외 사례를 보면 광역권 형성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이며 대중적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침
- 중앙집권형인 영국의 지역개발청과 같은 지역별 광역경제 본부 설치는 지방분권의 확대를 지향하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

-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의 모색이 필요
 - 첫째,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앙정부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
 - 둘째,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시키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지역별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면 시·도간 자율로 구성하고 운영
 - 셋째, 중앙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발굴한 광역경제권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재원은 ‘사업단위별’로 배분되어야 함
 - 넷째,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사업을 위해 배분되는 모든 예산(100%)에 대해 지자체의 재량권 부여
 - 다섯째, 광역경제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공장 신·증설규제,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폐지
 - 여섯째, 광역경제권의 비전, 전략, 정책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공동 연구 및 국민들의 합의를 통한 광역경제권 추진

I

문제제기

-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에 발표한 5+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인수위의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아직 없는 상황임
- 인수위가 제안한 지역별 광역경제권본부는 기관의 위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이 불분명함
- 광역경제권 형성은 중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향후 심도 있는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결정되어야 함
-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전략을 평가하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II 5+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평가

1. 인수위의 광역경제권 구상

- 인수위는 5+2 광역경제권 형성을 범정부적, 범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
-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, 충청권(대전, 충남·북도), 호남권(광주, 전남·북도), 대경권(대구, 경북도), 동남권(부산, 울산, 경남도) 등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도의 2대 특별광역경제권 제안
-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 특별위원회를 활용하고 대통령실이 “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”을 운용하여 중앙정부가 광역경제권간 정책의 기획·조정·모니터링
- 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, 지식경제부,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간 역할 분담
- 광역경제권별로는 일관된 통합·조정을 위한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지역자율형 지역본부체제인 “광역경제권본부” 설립
- 자율적 지역발전 효과의 극대화 및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통제·간섭으로부터 탈피 목적
- 지역 스스로의 협력·조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시·도 자체 인력으로 운용하며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완

- 주요 기능은 광역경제권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, 시·도 간 상호협약 체결, 광역경제권내의 지역간 정책 및 사업 조정, 사업의 성과관리, 권역내 시·도간 지원금 배분 등으로 상정
- 또한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및 광역발전포괄보조금제도의 시행 발표
-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과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,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운영
-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일부(예: 40%)를 광역발전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여 세출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유사·중복투자의 비효율을 지역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 제공
-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광역경제권간 배분 시에는 협력사업 내용, 재정자립도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권역간 차등 배분

2. 평가

- 광역경제권 구상은 글로벌경쟁의 조건에서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음

-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
- 그러나 인수위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소지가 있음
- 광역경제권본부에서 광역경제권 관련 제반 경제정책을 수행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획 권한을 상실하면서 광역경제 본부의 하부 집행단위로 전락
- 중앙에 의해 주도되는 광역경제권본부와 지방분권적 원칙을 견지하는 지자체간에 권한 및 업무 관할 문제로 인해 빈번한 갈등 야기 가능
 - 인수위는 광역경제권본부에 대해 지역자율형 본부라고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재정적·행정적으로 중앙이 주도하는 본부라고 명시적 언급(2008년 1월 29일 경향신문 박형준 인수위 기획위원 인터뷰 참조)
- 또한 인수위는 지역별 산업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지리적 접근성에 근거한 광역경제권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광역경제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지는 의문
- 현재의 산업구조상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지자체간 충돌 가능
 - 예를 들어 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의 선택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산업정책과의 모순이 발생될 수 있음

- 또한 인수위의 발표처럼 예산의 일부만을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면 세출운용의 자율성이 부족하게 되며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하는 재원배분은 효율성의 원칙에 맞지 않음
- 광역경제권 사업이 지자체들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들에게 재정운용의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함
- 광역경제권 사업은 경제적 원칙에 근거해야 하므로 재정 지원도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

III 해외사례

1. 영국

- 영국의 국토정책은 1990년대 들어 재분배적 지역정책에서 경쟁적 지역주의(competitive regionalism)로 전환
 - 각 도시와 지역들은 중앙정부 및 EU의 재원과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
- 영국의 광역권(Regions) 형성의 모태는 지속적인 지역불균형에 직면한 보수당 정부가 1994년에 설립한 지역정부사무소(Government Offices of the Regions, GOR)
 - Eastern, East Midlands, London, North East, North West, South East, South West, Yorkshire and Humberside, West Midlands 등의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사무소 설치
 - GOR은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역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관리
 - GOR은 중앙정부의 부처 연합 지역사무소에 불과하였지만 지역 밀착형 지역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의의가 있음
- 1997년에 집권한 신노동당정부는 런던광역시(Greater London Authority)를 포함하여 잉글랜드를 9개의 광역권으로 구분

- 지속적인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지역 스스로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신노동당정부의 기본 인식
- 또한 정부는 모든 지역의 경쟁력 개선이 영국 전체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다고 강조

※ 스코틀랜드, 웨일즈, 북아일랜드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분권화

□ 영국의 광역권 거버넌스의 핵심 기관은 지역개발청(Regional Development Agency, RDA), 지역협의회(Regional Assembly, RA), GOR 등임

○ 9개 광역권에 1999년부터 설치된 RDA는 중앙정부의 기업과 규제개혁부(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& Regulatory Reform, 1999년 당시에는 무역상무부) 산하 기구임

-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대행기관으로 6개의 정부부처에 의해 ‘Single Pot’이라는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을 받음
- 지역 재개발, 사회적 혁신,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 전반에 대해 관장하고 있으며 핵심 기능은 장기적인 지역 경제발전전략을 기획·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○ RA는 RDA 도입에 이어 설립되었으며 지역계획체로서 RDA와 협력적 관계

- 지방자치단체, 사회 각 분야 및 기업계 등의 대표 인사들로 구성
- RDA 사업 검토 담당

- GOR은 지역 경쟁력 강화, 지속가능한 발전, 재생 및 사회적 통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프로그램이 지역 내에서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지원
 - 중앙정부의 11개 부처를 대표하며 정부 정책을 RDA에게 전달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담당
 -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지역 관련 업무를 조정·통합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채널역할 수행

2. 프랑스

- 프랑스의 행정은 국가가 중심이며 지방행정은 레지옹(Région), 데빠르망(Département), 꼬뮌(Commune) 등으로 분산화
- 레지옹은 레지옹계획, 경제발전, 직업훈련, 고등학교 건설 등 담당
- 데빠르망은 도로, 사회서비스, 소방, 사회보장, 중학교 건설, 농촌계획 등 담당
- 꼬뮌은 도시계획, 토지이용통제와 치안(시읍면) 경찰 담당
- 정치적으로는 레지옹에 지역의회(Conseil régional), 데빠르망에 도의회(Conseil général), 꼬뮌에 시읍면의회(Conseil municipal) 등이 각각 구성되어 있음

- 프랑스 정부는 1997년 12월 15일 국토개발정책의 재개 선언 이후 국토를 광역권(le grand ensemble interrégionaux)으로 재편하기로 결정
- 지역간 행정적 구분을 초월한 광역권 형성은 지속적인 지방 분권 정책의 발전과 유럽연합의 강화를 주요한 배경으로 하고 있음
 - 제1차 분권화는 1982년에 시작되었으며, 제2차 분권화는 2003년의 헌법 개정을 거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지방의 책임성 강화
 - 1993년 단일시장의 형성 이래 증가되어 온 유럽내 경쟁 심화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정책의 일환
- 그러나 광역권의 형성이 레지옹과 데빠르망 등 여타 행정적 구성이나 조직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
- 1998년부터 DATAR는 6개의 광역권을 구분
 - ※ DATAR(Délégation à l'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'action régionale, 국토개발과 지역 활동을 위한 대표단)은 2006년부터 국토와 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범부처간 대표단인 DIACT로 개편
- 동부권, 서부권, 남동권, 남서권, 빠리권 등 다수의 레지옹들로 구성되는 5개의 광역권과 1개의 레지옹만으로 구성되는 노르빠드칼래(Nord-Pas-de-Calais) 등으로 구분

- 광역권 형성과 동시에 지역간 협력을 위해 MIAT(Mission Interministérielle et Interrégional d'aménagement du territoire, 국토개발을 위한 부처간·지역간 대표단) 구성
- MIAT는 1998년과 2000년에 걸쳐 6개의 광역권에 설치되었으며 경직적인 지역적 틀을 넘어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증감상황에 기초한 대규모 지역 중심으로 운영
- MIAT는 DATAR 산하 조직으로 레지옹의 도지사들중 조정자 역할을 하는 대표 도지사(빠리권의 경우 일드프랑스의 도지사)의 책임 하에 지역간 연구 수행
 - 레지옹 도지사들의 연구 수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레지옹 도청들의 부서간 네트워크 형성
- MIAT는 국토 개발과 광역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전략적 임무로 하여 지역계획화의 개선, 인구 증가와 대기업의 지리적 조직화에 의해 변화된 국토의 재편,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함
- MIAT는 관측, 감시, 전망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기여
- 2004년 5월 14일 수상은 MIAT를 MEDCIE(Mission d'études et de développement des coopérations interrégionales et européennes, 지역간·유럽간 협력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대표단)로 대체

- MEDCIE는 연구 주제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역의회, 지방공공단체 등과 공동연구
 - 연구 주제는 고등교육, 연구와 혁신,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의 구조화와 조직화, 경쟁력 거점 등 광역권의 요구에 따라 선택
 - 2006년의 핵심적인 사업은 2004-2006년의 연구 결과 완성과 다양한 세미나 개최
 - 2006년 기준 6개의 MEDCIE는 DIACT로부터 320,000유로의 예산 지원을 받음

3. 독일

- 독일의 광역권 형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
- 독일은 글로벌화와 유럽통합으로 인해 광역권 형성의 필요성 제기
- 글로벌화와 유럽통합은 도시 센터와 씨티(City)의 공간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침
- 유럽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, 생산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계의 해체는 노동의 광범위한 분업과 함께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도시와 지역 사이의 상호의존 강화
- 교육, 전문가, 지식과 혁신 역량은 생산과 지역 선택의 결정적인 요소
 - 지식과 혁신의 발생, 문화적 제도와 이벤트들이 유럽 전역에서 주요한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새로운 도시 연합 형성

- 독일은 연방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공간개발계획이 없음
- 전반적인 공간개발에 대해 중앙정부와 각 주(Länder)들이 Ministerial Conference for Regional Planning(지역계획을 위한 각료회의)에서 토론을 하고 정책 가이드라인 제안
- 2005년 4월 지역계획담당각료회의(Standing Conference of Federal and State Ministers Responsible for Regional Planning)에서 가이드라인 제시
- 성장 및 경쟁력과 관련된 공간개발정책의 역할,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공공서비스 보장,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한 관리·자원보호와 개발잠재력의 보호를 통한 공간계획의 강화 등 3가지 가이드라인 제시
- 대중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공개 토론 진행
- 2006년 6월 30일 지역계획담당각료회의에서 독일의 공간발전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“독일 공간개발에 대한 비전과 전략(Visions and Strategies for Spatial Development in Germany)” 승인
- 성장과 혁신, 공공복지서비스 보장, 자원 보존과 문화 경관의 형성 등 세 가지 핵심 개념 채택
- 공간개발전략으로 9개의 광역책임공유공동체(large-area communities of shared responsibility) 승인

- 독일의 광역권 개념은 메트로폴리탄 지역, 메트로폴리탄 외의 성장지역, 구조적 결점을 가진 안정화가 필요한 지역 등 3가지 유형의 공간 연결을 포함하는 상호의존적인 책임 공동체 의미
 - 그러나 광역책임공유공동체는 각 주들간의 경계와 현존하는 계획화지역을 초월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행정적 구조와 업무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불과
 - 다양한 지역 및 시읍면의 협력적 연합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지역과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협력을 조직화
- 광역책임공유공동체적 접근은 세계적 추세로서의 도시화 과정을 인정하면서 기회를 만들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발전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
 - 대규모 책임공동체의 개념은 주들의 통합이나 행정적 재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지역적 거버넌스의 일환

4. 일본

- 일본은 분권화에 근거한 광역계획체제를 위해 광역권 구분
- 일본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대두, 저성장, 재정제약, 인구감소 및 저출산·고령화, 환경제약 등에 직면하여 새로운 국토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음
- 국제경쟁력 있는 국토구조의 재구축, 지역간 경쟁력이 있는 지역 구조의 재구축, 자랑스럽고 정주할 수 있는 생활권의 형성 필요

- ‘개발’을 기조로 하는 양적 확대에서 국토의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 필요
-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, 동북권, 북륙권, 중국권, 구주권, 사국권, 근기권, 중부권 등 8권역으로 광역권역 설정
- 2005년 국토총합개발법을 폐지하고 국토형성계획법 제정
- 국토형성계획법에 따르면 전국 계획은 국가에 의해 제시되는 반면 광역지방계획은 블록단위의 지방을 구성하여 국가와 도부현 등이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대 협력
- 계획의 작성 및 원활한 실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 분국, 관계 도부현, 관계 정령시, 경제계 등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장으로서 광역지방계획협의회 조직
- 따라서 일본의 광역권은 광역계획체제 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권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음

5. 소결

- 영국의 광역권 형성은 지방분권화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역 개발 과정에 지역민의 이해를 반영하여 중앙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 목적
- RDA의 권한은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된 기능에 한정되며 지역정책의 ‘소유권’은 중앙정부에게 있음

- RDA의 권한과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RDA의 조정자적 역할은 상이한 정책들에 책임이 있는 중앙 부처들의 경쟁적 아젠다에 의해 저해를 받음
- RDA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할당된 예산을 자유롭게 쓰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이지만 지방분권적이지는 않음
- 프랑스는 중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광역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MEDCIE가 레지옹간 협력 수준에서 공동연구 진행
- 프랑스의 경우에는 과도한 지방분권화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광역권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이 주요한 과제
- 독일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공개적 토론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광역권 형성 전략 추진
-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지방들간의 협력 도모와 책임공유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지역간 연대(solidarity)의 관점이 강함
- 일본의 광역권은 경제적 의미보다는 공간계획 수립의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강화 및 계획의 효율성 도모 목적
- 중앙집권형인 영국식의 RDA설치는 이미 지방자치가 자리잡았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음

-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지방분권의 원리에 근거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권 형성이나 일본과 같은 공간계획의 합리화를 위한 광역계획권 형성이 우리 실정에 더 적합

- 특히 해외사례를 보면 다년간의 연구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광역권 형성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음

IV 경기도의 대응 방향

1.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현황과 문제점

- 새 정부는 3월중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이미 만들어졌으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음
- 관련 법안은 4월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함
- 현재 중앙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광역경제권특별회계의 재원 조달 및 규모,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치 여부 등이라고 함
 - ※ 광역경제권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는 균특회계의 7.6조원에 2.4조원을 추가한 10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음
-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인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
- 특히 광역경제권 제안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있으나 광역경제권 논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도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과 규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

-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
- 첫째, 광역경제권 관련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추진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둘째, 광역경제권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음
- 셋째, 해외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광역권 형성은 중장기전략으로 많은 대중적 토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부족

2. 경기도의 대응 방향

(1) 광역경제권 관련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 참가

-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앙정부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
-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광역경제권 추진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호 수평적 의견교환과 협력 유도
- 또한 광역경제권 관련 특별법 제정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기구를 제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

(2) 지방분권의 강화에 기반한 광역경제권 추진

- 광역경제권의 구체적인 형성과 사업 추진은 향후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 단계에서는 광역경제권 논의와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
- 광역권 형성은 지방분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시키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광역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
- 따라서 지역별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면 시·도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
- 중앙정부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가 자발적으로 광역경제권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적 역할 담당
- 현 단계에서 광역경제권 지역본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도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광역경제권 지역본부 설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시도에게 재량권 부여
 - ※ 지방자치법 제152조, 제159조, 제165조 등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협의회, 조합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공동의 사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

(3)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공동발굴사업 지원

- 중앙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발굴한 광역경제권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함
- 시·도간 자율적 합의를 기초로 스스로 발굴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광역경제권의 취지에 부합
- 또한 광역경제권의 형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성과에 근거하여 ‘사업단위별’로 재원 배분
-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는 공동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에게 사업의 규모나 성과 평가에 근거하여 차등적인 예산지원 필요
- 광역경제권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,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근거한 교부세 배분방식을 지양하고 EU나 여타 선진국처럼 ‘사업단위별’ 재원 배분 필요
-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지원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함
- 예를 들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·충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여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공동사업과 동등한 지원 필요

(4) 광역경제권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형태의 지원

- 광역경제권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는 배분되는 모든 예산(100%)을 사업주체들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으로 지원
- 칸막이를 통한 사전적인 예산 통제에서 사후적인 성과 평가 중심으로 전환
-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경제권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더라도 향후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할 것임
- 균특회계 존치 여부 및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
 - ※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국세증가분을 ‘광역경제권사업을 위한 특별회계’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

(5) 수도권 규제 합리화

-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
- 광역경제권의 형성을 통해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네트워크 및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

- 특히 지자체간 대규모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는 기업이므로 광역경제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공장 신·증설규제,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제 폐지 필요
- 경기도나 서울 등 수도권이 다른 지방과 대규모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

(6)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광역경제권 추진

- 해외의 경험을 보면 광역권의 형성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이며 대중적 토론과 협의과정 필요
-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국민 의견수렴 필요
- 광역경제권의 비전, 전략, 정책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들과 중앙 정부의 공동 연구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형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 추진
- 효율적인 광역경제권의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광역경제권 구성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
 - 서울 및 경기도와 같이 인구 천만 이상의 대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도들이 수도권이라는 광역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 필요
 - 지방은 광역권 형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합리적인 구성 방안 추진